
Policy and Law Report _Vol.17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1.30.~2.5.) -

February 6,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환경부	•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 발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22.12.31)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순환경제 :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 올해 추진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순환경제 기반 강화) 순환자원고시, 규제특례제도 도입, 신산업 육성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 차질 없이 준비 * (개정규정 시행일) ○ 순환자원 고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24.1) ○ 수리용이성 제고, 유통포장재 감량 노력 등 준수사항 시행 등 (’25.1) - 플라스틱, 미래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이차전지 등)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포럼)를 구성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산업 등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 지원 ② (플라스틱 감량) 행동변화형 감량캠페인, 컴보증금제 성공모델 구축 -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줄이되 감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확대 ③ (온전한 재활용) 분리배출 제도 개편, 물질·열분해 재활용 인센티브 등 - 분리배출 요령을 개선하고, 분리배출 정보 제공 강화 -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 * (생활폐비닐 재활용 비중, ’20년) 소각형재활용 80% vs 물질·화학재활용 20% -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도 올해부터 차등 교부 ④ (불법행위 원천방지) 첨단 기술 활용 지능형 폐기물 관리, 공공책임 수거 - 인계·인수량 외에도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에서의 계근값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폐기물 발생 원천 차단 -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거부(폐지, 폐비닐 등)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개입 확대	2023-01-31

부처	내용	일시																		
고용 노동부	•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미래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과 함께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성장 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함 <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 <table border="1"> <thead> <tr> <th>As-is</th><th></th><th>To-be</th></tr> </thead> <tbody> <tr> <td>총 고용률 관리</td><td>> 목표 ></td><td>핵심타깃 고용률 집중 관리</td></tr> <tr> <td>사후적·방어적 노동시장 충격대응</td><td>> 국정운영 ></td><td>산업·인구구조 전환 미래 대응체계 구축</td></tr> <tr> <td>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td><td></td><td>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집중</td></tr> <tr> <td>현금지원</td><td>> 정책수단 ></td><td>노동시장 참여형 고용안전망 구축</td></tr> <tr> <td>정부주도·직접일자리</td><td></td><td>민관협업·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td></tr> </tbody> </table>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장벽 제거 -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노동공급 여력 확충이 필수적인 바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하여 일자리격차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 직면한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위기를 조기 포착하여 선제 대응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수요와 공급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력 지원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 구축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 정부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혁신성장을 지원	As-is		To-be	총 고용률 관리	> 목표 >	핵심타깃 고용률 집중 관리	사후적·방어적 노동시장 충격대응	> 국정운영 >	산업·인구구조 전환 미래 대응체계 구축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집중	현금지원	> 정책수단 >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안전망 구축	정부주도·직접일자리		민관협업·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2023-01-30
As-is		To-be																		
총 고용률 관리	> 목표 >	핵심타깃 고용률 집중 관리																		
사후적·방어적 노동시장 충격대응	> 국정운영 >	산업·인구구조 전환 미래 대응체계 구축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집중																		
현금지원	> 정책수단 >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안전망 구축																		
정부주도·직접일자리		민관협업·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부처	내용	일시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및 한국엔젤투자협회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함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자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모기금(펀드) 부실 운용 사태 이후 신탁업자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 수탁을 기피하면서 조합을 결성하려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등은 조합 재산을 보관·관리해 줄 신탁업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그간 간담회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의 필요성과 수탁업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됨 이번에 마련된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탁업무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탁업무 범위)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범위* 명시 *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 조합의 장부상 재산과 실물 재산의 대사,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처분수익 등 수입의 처리 등 ② (운용지시) 업무집행조합원은 운용지시서로 조합 재산 운용 관련 지시를 하여야 하고 투자 관련 권리증서*를 15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에 제공 * 주식미발행확인서, 사채권, 사채미발행확인서, 프로젝트투자 계약서 등 ③ (재산내역 대사) 신탁업자는 조합의 재산 보관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하고 매월 재산 보관내역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제공 ④ (보고) 신탁업자는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권리증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부에 보고	2023-01-31
금융감독원	•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발간 금융감독원은 신규 자산운용업자의 법규내용 숙지, 진입 예정업자를 위한 제도 소개 및 기존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규 개정내용 안내 등을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 개편,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사모 운용사 진입규제 완화, 사모운용사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등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2022년 개정판)」를 발간함	2023-01-27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2.4. 시행)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8817호, 2022. 2. 3. 공포, 2023. 2. 4. 시행)됨 이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재심사 청구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협정에 대한 의정서 공통규칙」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2항제5호, 제2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0조의2 신설, 제82조 등)	2023-02-01
국토 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27. 시행)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수도공급설비 중 마을상수도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제6조제1항에 제6호의2 신설, 제10조제1호, 제16조제1항제2호 등)	2023-01-27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3.2.3. 시행)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맞추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을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 규칙에 따른 규율 범위를 조정하고,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의무 면제대상을 외교용등의 자동차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2항 등)	2023-02-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해양 수산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 (2023.2.3. 시행) 어구(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대한 신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 이에 따라,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어업면허 ·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 변경신고 등의 방법,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 변경신고 방법 등 (제76조 및 제77조) -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어구생산업 · 어구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 · 소재지, 사업의 유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② 어구생산업자 · 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80조 및 별표 14)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해당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함 -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가 생산 · 판매한 어구의 종류 · 구매자 · 수량 등의 기록 사항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 · 제거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등 어구생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③ 어구 및 폐어구 · 유실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82조) - 효율적인 어구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어구의 생산 · 유통 및 사용 현황, 폐어구 · 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수거 ·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023-02-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④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 (제8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 기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내용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해당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식품 의약품 안전처	• 「<u>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u>」 (2023.1.30. 시행)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제56조제1항, 제101조제2항 등)	2023-01-30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급성중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화학물질 등록 등 유통 관련 정보의 공유로 화학물질의 유통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추가 (안 제8조의2)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관계 전산망의 이용 대상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정보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정보, 통계조사 정보 등을 추가함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근거 (안 제105조제3항, 안 제115조제46호 등)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③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안 별표 35)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그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던 것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1/31(화)~3/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제출 (재입법 예고)	2023-01-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승인을 받거나 비공개 승인이 연장승인된 경우 해당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절차를 정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의 이수기간을 확대하고,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시점 이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위임근거 추가 등 (안 제26조)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 제29조) ③ 수입자의 비공개승인번호 연계 허용 (안 제162조) ④ 석면조사 생략 신청 면제 (안 제175조) ⑤ 질병자 등의 근로제한 해제 절차 명문화 (안 제221조) ⑥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근거 및 서식 신설 (안 제228조의2, 별지 제90호의2 및 3 신설) ⑦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 (안 별표 4) ⑧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 (안 별표 5) ⑨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에 대한 정보 추가 (안 별지3호서식) ⑩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대상 완화 (안 별지 제77호 서식) ⑪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완료증명서 서식 변경 (안 별지 제104호 제105호서식) ※ 의견 제시기간 : 2023/1/31(화)~3/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제출 (재입법 예고)	2023-01-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고,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작업 종류와 관계없이 비계기둥의 간격을 넓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22.1월, 6명 사망), 안성시 물류센터 붕괴사고('22.10월, 3명 사망)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하여 비계용 강관, 목재 이음 방법과 같은 최근 건설현장의 작업 현실과 괴리가 있는 안전기준은 삭제하고 보 형식의 거푸집, 굴착면 기울기 안전기준을 관계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붕괴 관련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인정 (안 제13조) -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 의무의 예외로 포함함 ② 계단참의 설치 기준 명확화 (안 제28조) - 높이를 포함하여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및 설치 기준으로서 이동 방향으로의 길이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함. ③ 강관을 사용한 비계기둥의 간격 예외 규정 확대 (안 제60조) -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구조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등 작업 종류와 관계없이 비계기둥의 간격을 2.7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④ 고소작업대 이동 시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 금지 (안 제186조) - 고소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는 경우 짧은 구간에 대해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작업대를 내린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⑤ 거푸집·동바리 등 붕괴사고 예방 관련 안전 규정 정비 (안 제328조부터 제337조까지) - 최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계용 강관, 목재 이음 방법, 강재의 사용기준(별표 10) 등의 규정을 삭제함 - 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강제 갑판과 보, 벽체, 브라켓 등 접합부의 구조적 강성, 충분한 걸침 길이 확보 등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안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콘크리트 펌프, 펌프용 비계 등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분배기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장비 관련 규정으로 정비함	2023-01-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⑥ 노천굴착작업 시 안전 규정 정비 (안 제338조부터 제347조까지)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지반의 종류별로 일원화하고 굴착면의 기울기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 - 법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반 안정성 검토 등에 따른 기울기도 허용 -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한 후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명시함 ⑦ 해체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신설 (안 제39조 및 제384조) -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함 ⑧ 중량물의 구름으로 인한 위험 방지 (안 제386조) - 경사면이 아닌 곳에서도 취급장소 또는 모양 등으로 인해 구름 위험이 있는 중량물 취급 시에는 구름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1/31(화)~3/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제출 (재입법 예고)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등)	2023-01-27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0인)」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해당 여신전문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여신전문회사를 사금고(私金庫)화하거나 여신전문회사의 인사·경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여신전문회사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회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의2제5항)	2023-02-0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u>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0인)</u>」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사금고(私金庫)화하거나 금융기관의 인사·경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9항 및 제45조의4)	2023-02-01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u>」 현행법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하고 그에 속한 회사 및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등에게 여러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기업집단현황을 매년 공시하고, 특수관계인과 대규모내부거래 시 그 내용을 공시하며,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추가로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현황을 보면 공시 비중의 약 50%를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력집중 및 내부거래 감시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이미 포함된 임원 현황과도 중복되는 내용으로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은 면제 근거가 없어 공시기한을 짧은 기간 초과하거나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예외 없이 부과되고 있어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30조제3항 신설)	2023-02-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u>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u>」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 제공,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갑질, 최고경영자의 성비위 스캔들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11조제2항제6호의2 및 제33조제2항 신설 등)	2023-02-02
	• 「<u>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6인)</u>」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률·의료·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법률·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2023-02-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고향에 기부금을 낸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은 함께 시작되지 못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함 이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였기 때문임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2023-02-0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2인)」 국가기술개발의 80%를 차지하는 기업R&D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R&D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4곳 중 1곳은 내년도 R&D 투자와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됨.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9.2%가 올해보다 축소하겠다고 답변함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3高 쇼크에 더해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R&D 동력을 잃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이전 대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으로써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12조의2제1항))	2023-02-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최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 내지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 내지 입장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인위적인 국론 분열 등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45조의4 및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2023-01-2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은 통신망이 없거나 주파수를 할당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를 통하여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임 해당 제도는 중소 신규사업자의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0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부칙 개정을 통하여 수차례 연장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2년 9월 22일에 일몰되었음 그런데 아직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요청 거부 또는 차별적 제공 등이 우려되므로,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운영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2023-02-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 및 가계통신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8조 및 제38조의2 신설)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2인)」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경기 불황과 투자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민간 자본의 벤처 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사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안 제13조) ② 내국법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하여 창업·벤처기업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와 투자금액 증가분의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안 제13조의2) ③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안 제14조) ④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하여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안 제16조)	2023-01-30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상호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며,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정부재정을 이용,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023-01-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러나 벤처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경기 불황과 투자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벤처 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이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2호 제13호 및 제63조의2 신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송전요금 또한 기술적 한계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발전측에는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전력의 약 40%를 소비하고 있는 반면에 발전량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거리 송전에 따른 막대한 송전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의 경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재산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송전비용을 반영하여 송전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변전소별로 산출하여 송전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송전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6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등)	2023-02-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등을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조직 수준이나 수·위탁 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작업이 완료되고 입법화될 때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근로현장에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53조의2 신설 등)	2023-01-30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의 표면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저공해자동차의 배터리성능에 따른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가 상온 저온으로 나뉘어 표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로 주행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자동차의 사용자가 자동차에 부착된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만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 등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안 제76조의4제1항)	2023-02-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일반원리 및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한편 사용료는 시험자료 취득금액에 일정 요율(料率)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는 바, 취득금액이 높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등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에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료 결정 기준 및 회계 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업종,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등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절한 사용료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9조의2 신설)	2023-02-03
국토교통 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중고차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75%의 소비자가 ‘허위·미끼 매물과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라고 응답했을 정도로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큰 상황이고, 허위·미끼 매물에 속아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가격조사·산정을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가격조사·산정제도가 있음을 알기도 어렵고 성능점검을 하는 시점과 소비자가 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시점의 차이가 커서 사실상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가격조사·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설명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58조제1항제4호 신설)	2023-02-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또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구조 장치 및 침수사실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 58조제1항제1호 등)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등 제품의 형식 및 사용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절기에는 자동차 연비,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등 일반적인 상온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자동차제작사에서는 상·저온 구분 없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를 반영한 복합 주행거리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및 연비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1항)	2023-02-03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2/6(월) 14:00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정치 외교 통일 안보)	
	2/7(화) 14:00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경제)	
	2/8(수) 14:00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 사회 문화)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2/9(목)	「이달의 입법민원」(2023. 1월호) 발간	
국회도서관	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4호 발간 - 독일의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2/8(수)	「World & Law」 2023-3호 발간 - 홍수, 가뭄, 산불, 한파... 이상기후 어떻게 대처하지?	
	2/9(목)	「현안, 외국에선?」 제52호 발간 - 의사부족 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	
입법조사처	2/6(월)	「이슈와 논점」 발간 -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미래연구원	2/6(월)	「Futures Brief」 제23-02호 발간 -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별첨1] 제403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과방위	2/9(목) 14:00	전체회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업무보고, 현안보고, 법안 상정
문체위	2/9(목) 14: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산자중기위	2/9(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현안질의
	2/10(금) 10: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중소벤처기업부 등 업무보고
복지위	2/9(목) 10:00	전체회의	-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법안 상정
환노위	2/9(목) 10:00	전체회의	-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 법안 상정
	2/10(금) 10:00	전체회의	- 환경부 등 업무보고, 법안 상정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를 건
국토위	2/9(목) 14:00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2/9(목) 10:00	전체회의	-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6(월) 10:00	실손보험 가입자들 뿔났다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간담회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2/6(월) 14:30	디지털 대전환 시대, 노인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	김민석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2/7(화) 10:00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특화단지 조성 포럼	양금희 의원실, 대구광역시	의원회관 3세미나실
2/7(화) 14:00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 상속세 개정 및 공익재단 활성화를 중심으로	박대출 의원실, (사)한국기업법연구소	의원회관 3세미나실
2/7(화) 14:00	환경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	이은주·심상정·우원식· 이학영·진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2/7(화) 15:00	제1회 중국의 정치체제 -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	홍영표·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2/8(수) 14:00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남인순·이주환 의원실, 동물복지 국회포럼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2/9(목) 14:00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송재호·조오섭 의원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의원회관 2세미나실
2/9(목) 14:00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 방안 모색	강병원·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70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30(월)	「소셜시그널」 제32호 발간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3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3호 발간 - 미국의 AI 채용절차 공정화 입법례	
	2/2(목)	「월간 국회도서관」 1·2월호 발간	
예산정책처	1/31(화)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발간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30(월) 14:00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31(화) 14:00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박성중·홍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